

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53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2. 27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0 1998. 3. 1일부터 행정소송의 제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주민들의 소송청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0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 1명에서 2명으로 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0 근거법령 :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

0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본 문 : 불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1인이내”를 “2인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촉)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<u>1인이내의</u> 고문변호사를 위 촉 할 수 있다.	제2조(위촉) <u>2인이내의</u>